

## “네! 고소” 기사로만 말하지 않는 기자들

기자에 분노하는 사회·최후수단으로 '소송' 택하는 기자들  
소송으로 사라지는 공론장·'비판 수인' 언론인 지위 강조하는 판결도

김도연 미디어오늘 기자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 기자 초년병 시절 선배들에게 많이 듣는 이야기다. 수습기자 때는 ‘좋은 기사를 ‘잘’ 쓰라는 의미로만 생각했다. 쓰는 문장마다 비문투성이에 팩트마저 헛거운 기사 때문에 데스크에 얼얼하게 혼쫓이 나다 보면 ‘기사로 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로 깨닫게 된다.

기사를 다루는 손이 제법 자유로워지고, 무엇이 사실이고 주장인지 구분하게 되어 내 기사를 쓰는 수준이 되면, 이 문장 의미는 또 다르게 다가온다. 기자 경력 10년이 넘은 지금 내게 ‘기사로 말한다’는 말은 ‘타인을 겨냥한 펜을 쥐었으니 기사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감수하라’와 같다. 매일매일 내게는 누군가를 비판할 지면이 주어진다. 데스크는 목에 핏대를 세우고 ‘조지는 기사’ 마감을 주문한다. 지면 하단에 비판 대상 입장, 즉 반론을 덧붙이곤 하지만 기사라는 것은 실명이 거론되는 누군가의 명예를 필히 훼손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흥기다. 기자나 기사에 대한 독자와 비평가들의 비판은 그저 감수해야 할 것이었다. 기자가 소송을 한다? 아이고,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 “기자는 기사로 말한다”는 말의 의미

그래서 2022년 9월 기자 22명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서울민예총’이라 한다)과 박찬우 작가를 상대로 위자료 2억 2천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

송을 제기했을 때, 개인적으로 고개를 가웃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면으로 작품의 후진성과 정파성을 비판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을까.

서울민예총은 2022년 6월 ‘굿, 바이 시즌2展 : 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전시를 개최했다. 서울민예총 시각예술위원회 박찬우 작가는 100명 이상의 전·현직 언론인을 회화화한 실명 캐리커처를 출품했다.

캐리커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 강용석, 김세의, 김용호씨나 ‘조국 흑서’ 저자 서민 교수 등 보수진영 인사도 적지 않지만, 상당수는 현직 언론인이었다. 언론인 면면을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검증 보도했던 주요 방송·신문사 법조 기자들이나 문재인 정부에 비판 보도를 한 기자들이 대다수다. 그러다 보니 박 작가 작품에 ‘언론인을 풍자 도마 위에 올리는 기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진보 인사에 비판적인지 여부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한국기자협회가 법률 지원을 맡은 이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기자들은 작품과 전시가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민예총과 박 작가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당시 ‘굿, 바이 전’ 작가들은 “작가 작품에 불만이 있고, 불편하고, 곁끄러우면 그렇게 표현하면 된다”며 기자들 대응을 비판했다. 반이정 미술평론가는 “민주당 진영을 선한 자로, 민주당에 반대하는 진영을 악한 자로 양분하는 예술은 풍자가 생략된 일방적 선전물”이라며 “그래도 이런 수준의 작품과 전시가 열리는 걸 막을 순 없거니와 막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류 예술이 ‘정의감이 충만한 후진 예술인 점을 이해하고 동조하지 않으면 된다’<sup>1)</sup>고 말한 바 있다.

혹자는 반문할지 모르겠다. 기자는 소송하면 안 되는가? 물론, 언론인의 고소·고발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소수지만 일부 언론인은 소송전을 불사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매년 발간하는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언론소송을 제기한 언론인은 5명. 이는 정치인(21명)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과 2021년에도 각각 5명의 언론인이 언론소송에 나섰다. 아무리 언론인이 펜과 지면을 쥐고 있대도 소송이 아니면 피해 구제가 어려운 사건도 존재한다.

언론인이 제기한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언론소송 사건을 소개한다. 아래 사례들을 보면, 아무리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공인 신분인 기자여도 소송이 아니면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 언론인들이 최후 수단인 ‘소송’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볼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법원은 기자에 대한 비판을 넓게 인정하고 언론인이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에 해명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1) 김도연 (2022. 6. 7). ‘기자 조롱’ 캐리커처에 기협·언론사 소송 예고. <미디어오늘>. URL: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356>

## CASE 1 : ‘소송’ 반격 나선 前 <채널A> 기자

먼저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과 유착해 취재원을 협박하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진보 정치권 인사들의 비위 제보를 강요했다는 혐의(강요미수)를 샀다가 올해 초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야기다.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까지 됐던 그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보 진영 인플루언서 김어준씨, 유시민 전 이사장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최 의원 페이스북 글이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3일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취재원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고 발언했다고 썼다. 그러나 이 내용은 허위사실이었다. 이 전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쓴 것이다. 이 전 기자는 이듬해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으니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1·2심 모두 최 의원에게 300만 원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6월 2심 재판부(서울고법 민사13부)는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취재원에게 보낸) 편지와 발언 요지를 왜곡해 기자가 검사와 공모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재판은 무죄를 선고하며 최 의원 손을 들어줬다. 최 의원이 이 전 기자 명예를 훼손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드러냈지만, 이 전 기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최 의원 글이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기자의 보도 윤리와 정당한 취재 활동의 한계, 언론과 검찰의 관계, 선거의 공정한 진행 등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사회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부당한 취재 활동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피고인(최강욱)이 앞서 본 것처럼 허위사실을 드러냈다고 해도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을 자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최 의원 게시글의 공익성을 인정한 것으로 “기자가 검찰과 연결돼 위법한 취재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비판과 검증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자의 취재 활동에 견제와 비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1심 무죄 선고 후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해 2023년 9월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기자가 취재원으로부터 취재 정보를 얻기 위해 겁을 주거나 압박하는 ‘비윤리적 취재’에서 비롯한 것은 사실이지만,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으로 비화하면서 결국 기자가 구속되는 파국을 피하지 못했다. 이 기자는 2023년 6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나를 인격 살인했던 최강욱·유시민·김어준·황희석·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며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소송은 최후의 수단 아닐까?

## CASE 2 : 허위사실 유포에 재갈을 물리려면…

소송은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승소 시 효과가 크다. 유투버들의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한다. ‘허위사실 유포 틀어막기’는 언론인들이 소송을 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한 전(前) <TV조선> 사회부장 이진동 기사는 2023년 8월 18일 <월간조선> 출신 유투버 우종창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우씨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 기사의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우씨는 2018년 3월부터 반복적으로 이 기사가 윤석열 검사(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를 주도한 <한겨레>와 <TV조선>의 배후라는 주장이다. 이 기사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우씨와 이를 여과 없이 방송한 유투버들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2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판사는 우씨가 이 기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피고(우종창)가 적시한 허위사실, 즉 원고(이진동)가 윤석열 검사의 조언과 지시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을 왜곡 보도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언론인으로서의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면으로 “이진동이 기자라는 사실은 알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다. 2016년 6월 무렵 이진동과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거나 이 사건 CCTV 영상(최순실 의상실 영상)에 관해 이진동에게 법적 조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우씨는 이 기사가 최순실 보도 당시 법적 조언을 받은 인물로 자기 책에 언급한 익명의 검찰 간부를 윤석열이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강 판사는 “익명의 검찰 간부는 윤석열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우종창)가 이 사건 방송 등에서 원고가 윤석열 주도과 지시로 국정농단 사건을 취재·보도했다며 적시한 사실은 모두 허위”라고 했다.

법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서일까. ‘최순실 게이트 보도 배후에 윤석열 검사가 있다’는 주장은 온라인에서 자취를 감췄다.

### CASE 3 : 아무리 공적 존재여도 사생활 영역은...

종합일간지 출신으로 현재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인 A씨. 그는 <조선일보>, <펜앤드마이크>, <뉴데일리>와 그 소속 기자 5명을 상대로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2022년 9월 일부 승소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재판은 1심 판결로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유세 차량에 올랐던 20대를 겨냥해 SNS에다가 “애네들 얼굴 잘 기억했다가 취업 면접 보러오면 반드시 떨어뜨리세요. 건실한 회사도 망하게 할 애들입니다. 국민의힘 지지해 문제가 아니라 바보라서 문제”라고 거칠게 힐난했다.

<조선일보>, <펜앤드마이크>, <뉴데일리> 기자들은 논란을 부른 A씨의 SNS 발언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A씨의 전과(前科) 사실을 적시했다. A씨는 실제 관련 범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A씨는 이들 언론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 범죄 전과는 보도할 가치가 있었을까. A씨 전과는 이미 범행 당시 언론 보도로 알려진 사실이거나 A씨 스스로 전과 사실을 대중에 알린 적도 있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보도할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피소된 언론사들이 기사 일부를 삭제하고 기사 1건당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회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도 이를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일부 언론을 통해 원고(A씨)의 전과 사실이 보도됐거나 원고 스스로 전과를 공개했다고 해도 피고들이 원고의 전과 사실을 보도하여 원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펜앤드마이크>, <뉴데일리> 측은 A씨 전과는 이미 대중들이 익히 알고 있는 공개 정보라는 점, A씨 스스로 공공연하게 전과 사실을 밝힌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A씨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사들 측은 “공적 존재인 원고(A씨)가 게재한 게시물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독자가 원고 발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을 뒤야 할 것인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서 원고 전과를 언급한 것”이라며 “공공 이익을 위한 보도이기 때문에 삭제 대상이 될 수 없고, 불법행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전과는 (원고의) 게시물이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원고가 기자로서 공적 존재라고 해도 원고의 전과는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공적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사 가운데 전과가 적시된 부분이 A씨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삭제를 명했다. “삭제할 부분은 이 사건 보도의 전체 문맥이나 의

미 구조상 필수적이라거나 나머지 기사 내용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기사도 보장받아야 할 사생활이 있다고 법원은 본 것이다.

#### CASE 4 : “언론인에 일반인 잣대 적용할 수 없다”

현직 언론인은 아니지만 기자 출신 김장겸 전 <MBC> 사장 언론소송도 특기할 사건이다. 법원이 ‘공인으로서 언론인은 합리적 의혹과 비판을 수인할 책무가 있음’을 시사해서다. 비판을 어느 정도 허용하되, 의혹 제기는 해명과 반박으로 극복해야 할 지위라는 것이다.

김 전 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MBC> 인사 5명은 2021년 12월 노보를 통해 자신들을 비판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노보에 이들을 “편파 왜곡 보도를 주도한 간부”라고 비판하거나 “공영방송 MBC 파괴 주범” 등 표현으로 비난했다. 1심 법원은 2023년 5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언론노조 MBC본부 손을 들었다. 김 전 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4명은 항소했다.

문제가 된 2021년 9월 27일자 언론노조 MBC본부의 특별판 노보는 김 전 사장에 대해 “김장겸을 비롯한 MBC 내 부역자들은 정권의 방송 장악에 협력해 MBC를 정권에 헌납했고 그 대가로 승승장구했다”, “김재철 사장 시절 정치부장으로 왜곡·편파 보도에 앞장섰던 그는 권력 입맛에 맞는 MBC 보도를 만든 대가로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사장은 방송 공정성·공익성 훼손 등 이유로 2017년 11월 해임됐다. 특별판 노보는 2017년 ‘김장겸 사장 체제’에서 해직 언론인 출신 ‘최승호·박성제 사장 체제’로 교체된 <MBC>가 개혁 일환으로 진행한 지난 4년의 방송 정상화 과정과 인적 청산 작업을 되살펴 보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MBC>의 방송 공정성 후퇴 사례를 기록하기 위해 발간됐다.

김 전 사장 등은 노보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이고, 노조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 독자로서는 그 자체로써 원고들에 관한 어떤 명예훼손적 사실의 전달이라기보다 피고들(언론노조 MBC본부)의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과거 행적에 관해 피고들 관점에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판결문에서 인상적인 대목은 언론인에 대한 비판 잣대를 언급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언론인은 공인으로서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모두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사람들로서 공인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에게 통상의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그 재직 기간 동안 자신들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혹이 있으면 어느 정도 문제 제기나 일정 범위 비판 등은 허용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간행물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과격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격권 침해 등 부분이 피고들의 감시, 비판, 견제라는 언론 활동 범위를 벗어나 원고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거나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 의견 표명으로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 CASE 5 : 언론인, 언론사, 언론 대표자 잣대는 다르다?

이번에는 결정문을 살펴보자. 2017년 8월 개봉한 ‘공범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KBS·MBC 보도 공정성이 어떻게 후퇴했는지 담아낸 영화다. 정권의 방송 장악에 가담하거나 저항한 언론인들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비판 대상이 된 <MBC>와 전·현직 임원들은 개봉 직전 “우리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원에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영화 상영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 논리가 주목할 만하다. 서울중앙지법 제 50민사부는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갖고 있어서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서는 안 된다”는 2006년 대법원 판례(2003다52142 판결)를 인용한 뒤 다음과 같이 결정문에 적시했다.

“표현의 대상이 언론사가 아닌 언론사 소속 언론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언론사와 동일한 수준의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해당 언론인이 언론사 대표자나 주요 임원 직책을 맡고 있고 언론사 인사, 경영 방향, 정책 판단을 결정할 수 있고 언론사의 특정 쟁점에 대한 보도 여부에 대해서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해당 언론인은 자신들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도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언론사를 통해 직·간접적 반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그와 같은 언론인에 대한 감시와 비판 역시 폭넓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표현의 당부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준하여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법원 논리를 요약해 보면, ① 언론사와 소속 언론인에 대한 명예권 침해 판단 기준은 다르

다. 언론인 개인보다 언론사의 명예권 침해 여부를 더 엄격하게 본다. ② 하지만 보도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언론사 대표나 주요 임원의 경우엔 명예권 침해 여부를 언론사에 준할 정도로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가처분을 신청한 <MBC> 전·현직 임원들이 “비판과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그런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 기사로만 말하기 어려운 시대, 그러나

정리해보면, 앞서 본 사건들은 기자들이 소송을 택하는 여러 이유를 설명하고 일부 판결은 언론인이 공인으로서 일정 부분 합리적 의혹과 비판을 수인할 지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인이 제기하는 언론소송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짚고자 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언론인에 대한 반지성적 증오다. 2021년 ‘마이기레기닷컴’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논란을 부른 적 있다. 자경단을 자처하는 이 커뮤니티는 기자들에 대한 ‘A급 제보’(각종 비리, 불법, 탈법, 학교폭력)에 30만 원, ‘B급 제보’(경범죄, 방역 수칙 위반)에 20만 원, ‘C급 제보’(현재 사진, 과거 정보, 잡다한 제반 정보)에 10만 원을 걸었다. 이들의 뒷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기자들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이들이다. 리스트에 오른 기자들의 소속 매체가 틀린 경우도 적지 않았고, 기자의 각종 신상 정보가 동의 없이 게재되는 것도 문제였다. 심지어 가족과 함께 촬영한 사진도 커뮤니티에 업로드되어 조리돌림 대상이 됐다. 기자 개인 SNS나 온라인에서 확보한 정보가 이들 자경단 운영의 바탕이 됐다. 당시에도 기자협회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안타깝게도 뉴스 소비자들은 과거처럼 기사를 기사로만 평가하지 않는다. SNS가 기자와 독자의 거리를 매우 좁혔다.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기자 이름과 SNS를 찾아 맹비난을 퍼붓고 커뮤니티·유튜브상에 신상을 공개한다. 특히 일부 정치 팬덤들의 사이버 린치는 일상화한 지 오래다. 이들은 지면과 전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합리적 토론과 비판을 나누는 언론 기능을 약화시킨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공론(公論)의 파수꾼인 언론인들이 기자실이 아닌, 원고석(原告席)을 찾은 현실이 바람직하진 않다. 뉴스 소비자와 생산자, 독자와 기자 모두 ‘기자는 기사로만 말한다’는 말의 의미를 성찰해볼 때다. 